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93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3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093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현 행	개 정 안
□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벌의 전환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76조제3항¹⁾ 본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u>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u>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76조제3항 단서) (제2호) <u>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u> <신 설> (제3호)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77조제4항) <신 설>	○ (현행 유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u>제2호 또는 제4호</u>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76조제3항 단서) (제2호) <u>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u> (제2호의2) <u>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u> (제3호)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제3호) 과실로 <u>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u>

<신 설>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77조제6항) (제3호)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제4호) 과실로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제3호)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3항, 제277조제4항 및 제27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	---

* 박민규의원안 2026. 2. 26. 발의(의안번호 17093)

□ 개정안은 현행법 제276조제3항에 따라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인한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위반행위 중 아래의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 1)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벌금의 과태료 전환]

과실 위반 시 과태료 전환 대상 의무행위	현행	개정안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 관련 증빙 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제12조제1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76-③ 본문) / (과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276-③ 단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과 같음) / (과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77-④의 제3,4호 신설)
용도세울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제83조제2항)		
외교관용 물품 등 면세받은 물품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양수 (제88조제2항)		
재수출면세로 관세 면제된 물품을 해당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제97조제2항)		
재수출 감면으로 관세 감면된 물품을 해당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제98조제2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따라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양도 (제102조제1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 물품의 해당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제109조제1항)		

□ 현재 정부에서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나 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TF」(이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음.²⁾

TF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³⁾ 발표를 통해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강조함.

□ TF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는 세부내용으로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대한 110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포함된 재정경제부 소관의 「관세법」에 대한 개선안에 따라 본 개정

2) 재정경제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및 연구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2025년 8월 1일 제1차 회의 개최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2025.8.1.)

3)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및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2025.9.30.

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⁴⁾

□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TF 개선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과실로 인해 신고 등의 증거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용도세율·재수출면세 등 관세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있는데, 신고 등의 증거서류 보관 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전환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의무 위반으로서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용도세율·재수출면세 등 관세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전환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인 예로 신고의무 위반, 서류의 작

4)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 제시한 110개 개선안 중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개선안에 따라 발의된 관세 관련 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발의자	의안번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	박민규	221709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221695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2216998

성·비치·보존의무 위반, 자료제출 및 보고 거부 및 거짓 이행 등 대체로 절차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⁵⁾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⁶⁾

□ 용도세율 적용 또는 재수출면세로 관세 혜택을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용도세율 제도 등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관세 탈루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부당 수취했다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과태료 전환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부과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에 따라 대상자가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측면은 존재하므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를 형사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부과 상한액 상향으로 실질적인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금액으로 전환되도록 하고⁷⁾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무위반 행

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809-810.

6)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p.607.

7)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p.607.

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⁸⁾ 하는데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3백만원 상한이 과태료 1천만원 상한으로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 재정경제부는 형법 원칙⁹⁾에 따라 과실에 대한 형벌을 완화할 필요, 관세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의무 위반 시 관련 이익의 추징 규정 존재¹⁰⁾ 및 실제 과실에 의한 해당 의무 위반의 사례가 적은 점¹¹⁾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 참고로, 「관세법」의 용도세율 조문 및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문 등을 준용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의 과실 위반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¹²⁾이 발의돼 있어 같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8)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810.

9)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0) 용도세율의 경우 「관세법」 제83조제3항 또는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규정인 「관세법」 제102조제2항 등에 따른 즉시 징수

11) 2020-2024년도 과실범 벌금 부과: 장부보관 의무 위반 15건, 용도세율 등 사후관리의무 위반 2건

12)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998, 발의일자 2026.2.24.